

제2492호
2017. 01. 0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6-12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 제2016-127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 제2017-1호 : 다동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 4
 - 제2017-2호 : 남대문구역 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9
- 공 고
 - 제201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12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15-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199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15-7	2010.6.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0)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12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48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48	2017.1.4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0)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호

다동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9.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1호(2007.5.25.)로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중구 다동 51번지 일대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결정취지

- 서울시 도심 내 업무시설 및 상가밀집지역 인근 부지 내 문화적·환경적 요소와 어우러진 도심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번지 일대

3. 면 적 : 3,936.20㎡

4.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0)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86), 공원녹지과(☎ 3396-5852)

명동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중구 다동 51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계		3,936.20	778.32				61	
기 반 시 설	소계	752.23	752.23					
	도로	607.50	607.50					
	광장	144.73	144.73					
조 경 시 설		10.53	10.53					
휴 양 시 설		14.56	14.56				9	
유 희 시 설								
교 양 시 설								
운 동 시 설								
편 익 시 설		1.00	1.00					
관 리 시 설							52	
녹지 및 기타		3,157.88						녹지율 80.23%
시 설 율 (법정 제한없음)		$(778.32 / 3,936.20) \times 100 = 19.77 \%$						
건 폐 율 (법정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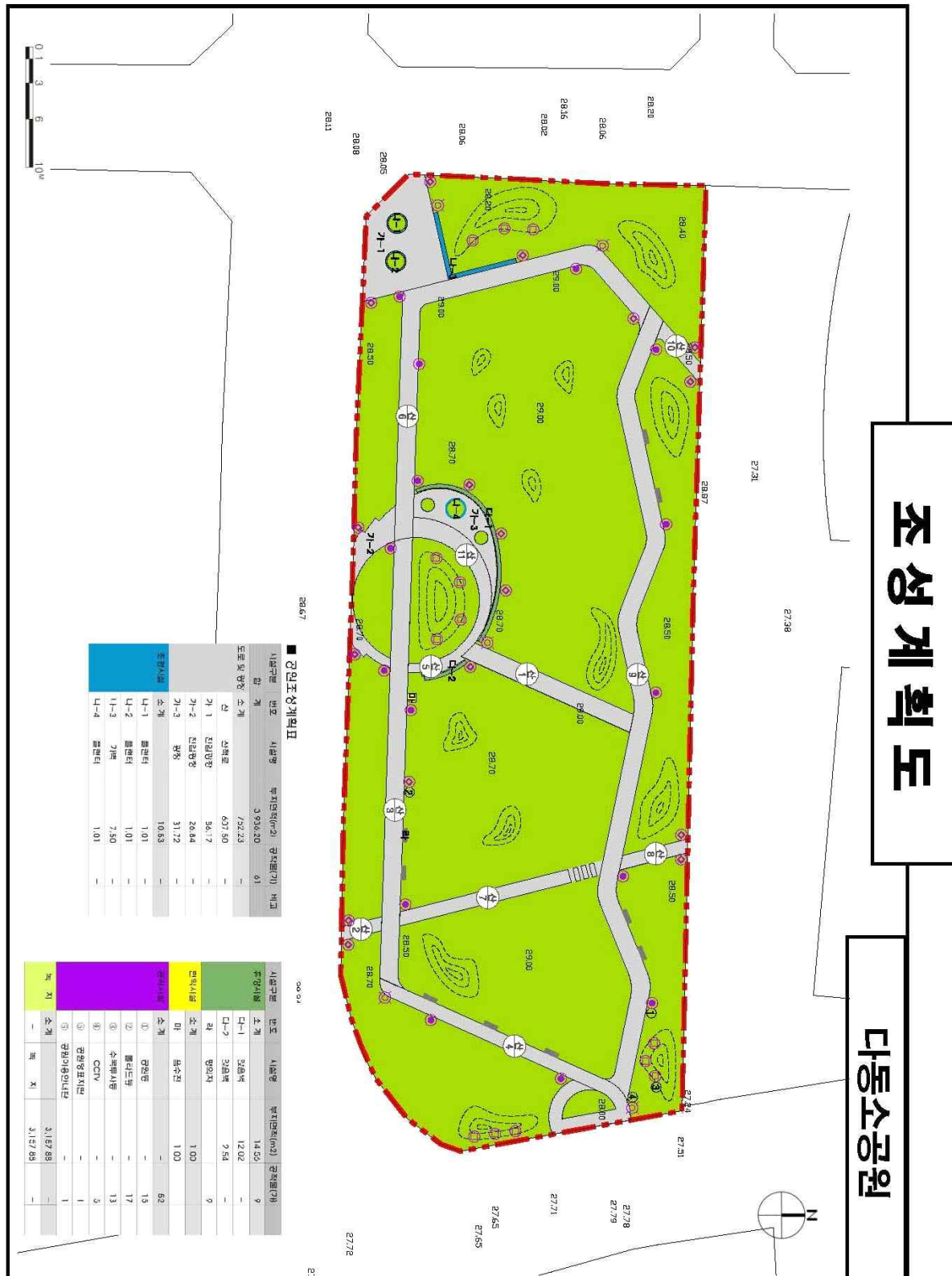
나.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2,117.00	1,075.30					61	
기반 시설	소 계			752.23	752.23						
	산책로	산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607.50	607.50						
	진입광장	가-1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86.17	86.17						
	진입광장	가-2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26.84	26.84						
	광장	가-3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31.72	31.72						
조경 시설	소 계			10.53	10.53						
	플랜터	나-1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01	1.01						
		나-2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01	1.01						
	가벽	나-3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7.50	7.50						
	플랜터	나-4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01	1.01						
휴양 시설	소 계			14.56	14.56					9	
	앉음벽	다-1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2.02	12.02						
		다-2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2.54	2.54						
	평의자	라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9	
편익 시설	소 계			1.00	1.00						
	음수전	마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00	1.00						
관리 시설	소 계									52	
	공원등	①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5	
	블라드등	②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7	
	수목투사등	③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3	
	CCTV	④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5	
	공원명표지판	⑤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	
	공원이용안내판	⑥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1	
녹지 및 기타	소 계			3,157.88							
	녹 지		중구 다동 51번지일대	3,157.88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m)	(m)	(㎡)				
신설	합 계				350	607.50				
	산책로		1	2	20	40	보행로	산책로11	산책로9	
	산책로		2	1.5	4	6	보행로	70-4공	산책로3	
	산책로		3	2	50	100	보행로	산책로6	산책로4	
	산책로		4	1.5	45	67.5	보행로	산책로3	산책로4	
	산책로		5	1~1.5	5	7.5	보행로	산책로3	산책로11	
	산책로		6	2	56	112	보행로	산책로9	산책로3	
	산책로		7	1.5	20	30	보행로	산책로3	산책로9	
	산책로		8	1.5	8	12	보행로	33대	산책로9	
	산책로		9	2	91	182	보행로	산책로4	산책로6	
	산책로		10	1.5	7	10.5	보행로	39대	산책로9	
	산책로		11	1.5~2	20	40	진입로	산책로6	산책로5	

라. 조성계획도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2호

남대문구역 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104호(2016.11.14)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56호(2014.07.19)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91호(2014.11.0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113호(2016.11.3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9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4,502.0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케이비부동산투자신탁(주) 대표이사 정순일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품림빌딩 15, 16층)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 01. 04.
7.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가.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하/지상)	용 도
3,739.40	1,986.22	53.12	60,481.52	999.97	지하8층/ 지상28층 (2개동)	숙박,업무 판매시설

나. 분양또는 보류지의 규모등 분양계획

구 분	규 모(㎡)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고
		토지등소유자	일반분양	보류지	
숙박시설	29,526.10	29,526.10	-	-	
판매시설	13,495.73	13,495.73	-	-	-
업무시설	17,459.69	17,459.69	-	-	-
합 계	60,481.52	60,481.52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연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구역편입면적(㎡)	용도폐지면적(㎡)	소 유 자
계	총 2필지		263.8	263.8	263.8	·
1	회현동1가 194-33	도로	165.0	165.0	165.0	국(재무부) 관리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	회현동1가 195-9	도로	98.8	98.8	98.8	국(건설교통부) 관리청 : 서울 중구청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입				
				계	도로	녹지		
1	회현동1가 194-3	대	738.50	270.70	270.70		KB부동산신탁	
2	194-19	대	804.60	180.00	180.00		KB부동산신탁	
3	194-33	도로	165.00	23.20	23.20		국 (재무부)	
4	194-55	대	10.60	10.60	10.60		KB부동산신탁	
5	194-56	대	10.80	10.80	10.80		KB부동산신탁	
6	194-57	대	8.50	8.50	8.50		KB부동산신탁	
7	194-58	대	7.90	7.90	7.90		KB부동산신탁	
8	194-59	대	8.60	8.60	8.60		KB부동산신탁	
9	194-60	대	9.30	9.30	9.30		KB부동산신탁	
10	194-61	대	10.10	10.10	10.10		KB부동산신탁	
11	194-62	대	9.10	9.10	9.10		KB부동산신탁	
12	194-63	대	14.20	14.20	14.20		KB부동산신탁	
13	194-65	대	5.00	5.00	5.00		KB부동산신탁	
14	194-66	대	19.40	19.40	19.40		KB부동산신탁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입				
				계	도로	녹지		
15	회현동1가 195-1	대	35.40	8.90	8.90		KB부동산신탁	
16	195-3	대	36.40	16.70	16.70		KB부동산신탁	
17	195-4	대	67.80	34.30	34.30		KB부동산신탁	
18	195-5	대	187.80	72.30	72.30		KB부동산신탁	
19	195-9	도로	98.80	14.30	14.30		국(건설부)	
20	195-13	대	36.40	13.60	13.60		KB부동산신탁	
21	195-14	대	40.70	15.10	15.10		KB부동산신탁	
합 계 (총21필지)			2,324.90	726.60	726.6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철거완료

8. 기타 관계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3396-5782). 끝.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가.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 나. 2015. 11. 1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 3396-4404, FAX: 3396-9013, 메일 : lejeh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